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	--

청원연월일 : 2019. 11. 12.

청원자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제안이유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2조는 경찰관의 임무를 규정한 직무조항으로써 경찰활동을 위한 개별적·일반적 수권조항이 아님. 직무조항은 타기관과의 관계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임무범위의 경계를 설정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수권조항이 될 수는 없음. 하지만 경찰은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한 수권규정이라는 불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음. 또한 이 조항을 정보국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경찰의 정보활동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

방·진압 및 수사 등 경찰의 종국적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함. 일반적인 행정기관도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활동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수단적·보조적 활동이므로 별도로 행정기관의 임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경찰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집행 및 수사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제2조 제4호와 같은 정보활동을 임무규정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치안정보’라는 개념은 정치학, 사회학 등의 관점에서 말하는 “통치”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서 법률조항에 등장할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법률적 임무범위를 위법하게 확장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실제로 경찰은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정치영역에 개입하는 등 국민이 아닌 임명권자를 위한 정보활동을 수행해 왔음. 따라서 경직법 제2조 제4호를 삭제하여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임무범위에서 벗어난 정보경찰도 폐지가 타당하며 이를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정보국 조항도 삭제되어야 함.

한편 경찰은 자신의 직무인 개별 위협방지 집행업무 및 수사업무의 한도 내에서 정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음. 이 때 정보가 공개적이고 비침해적인 방법에 의하여 수집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수권규정을 요구하지 않으나 침해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을 요구한다면 이를 필요로 함.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별도의 수권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수권규정이 제정되더라도 동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상의 침해, 특히 은밀한 정보상의 침해는 개인의 기본권(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구체적 위험’이라는 전제가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현재 「경직법」 제8조는 경찰의 사실확인, 출석요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타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들의 협조에 기반한 임의적 활동에 해당함. 따라서 「경직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5호, 제6호가 정하는 경찰 집행 및 수사업무의 범위를 고려하여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정보상의 수권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때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해야 함.

주요내용

1. 경찰관의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임무 삭제(안 제2조)

행정기관의 정보활동에 대해 별도의 임무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

2. 경찰관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 부여(안 제8조 제1항 신설)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단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제한.

3.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안 제8조 제4항 신설)

개인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직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

4.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용(안 제8조 제5항 신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름.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의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삭제한다.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정보수집과 사실확인 등) ① 경찰관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만 수집할 수 있다.

제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개인정보의 수집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직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하여야 한다.

제8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p>1. ~ 3. (생략)</p> <p>4. <u>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u></p> <p>5. ~ 7. (생략)</p> <p>제8조(사실의 확인 등)</p> <p><u><신 설></u></p> <p>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②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5. ~ 7. (현행과 같음)</p> <p>제8조(정보수집과 사실확인 등)</p> <p>① <u>경찰관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만 수집할 수 있다.</u></p> <p>② ----- ----- ----- ----- ----- ----- ----- ----- ----- -----.</p> <p>③ ----- -----</p>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 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2.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3. 사고로 인한 사상자(死傷者) 확인
4.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신 설>

<신 설>

-----.

1. -----
2. -----
3. -----
4. -----

④ 개인정보의 수집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직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